



통권 495호

2024 | 11

가정상담



LEGAL AID CENTER FOR FAMILIES TEL: 227-7568



지난 10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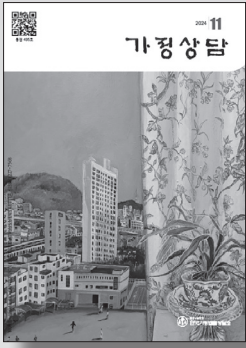
상담소에서는 시행 33년이 된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관련내용 6면, 관련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부 : 부정부패, 괜찮겠지?
- 정 : 정말 그럴까요?
- 방 : 방심하는 순간
- 지 :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①

17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⑨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④

25 · 가정폭력상담실

28 · 어떻게 할까요

30 · 새로 들어온 책

32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이 땅의 모든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상담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며

올해는 상담소 창립 68주년의 해입니다. 상담소의 역사와 과업을 생각하며 67차년도 즉 2023년도 상담통계집을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상담소는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담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모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일환인 상담통계집에 의하면 1956년부터 2023년까지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상담은 면접 상담 70만여 건을 포함해 2백만 건이 넘고 지금은 업무협력기관으로 전환되어 통계를 집계하지 않게 된 전국 지부의 경우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된 상담 기록이 2백 40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다루어진 상담이 4백만 건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절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관련한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면 상담소를 거쳐 간 사람과 그들이 속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라는 특성상 면접상담을 권하고 있지만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상담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화상상담 그리고 각종 출장상담까지 다채로운 상담방법의 진화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와 상담소의 유기적인 관계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처럼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1956년 창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왔고 또

걸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담소의 변치 않는 정체성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점이며 특히 가정문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법률구조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자들에게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액수 정도의 비용만 받고 행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의미합니다. 1958년 국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별 법률구조를 규정한 법률 및 기타 조항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명목 등으로 국제법률구조협회의 설립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 세기에 걸친 가부장제적 전통에서 여성의 권익신장 그리고 가족법상 남녀평등을 목표로 1956년부터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우리 상담소가 얼마나 선진적인 걸음을 해왔는지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사업은 사설단체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변호사단체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설단체의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라고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첫 단락의 경우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부정확합니다. 민간단체로써 법률구조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상담소는 68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며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이자 법률구조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왔으며 가정의 민주화를 통한 가족구성원 각자의 복리를 위해 가족법개정운동은 물론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교육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정문제와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출판 홍보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상담소가 최초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하고도 3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법률구조법이 만들어진 이후 비로소 드디어 상담소도 법률구조법

에 의거 약간의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담소의 선구적 면모 그리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가정문제 및 법률구조를 포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무색하게도 국가 기관이 있는데 민간단체까지 있어야 한다는 일부 정책 당국의 잘못된 시선이나 예산책정에 있어 일괄적으로 몇 % 삭감한다는 예산 당국의 방침 앞에서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백억, 천억 단위에서 5% 삭감한다는 것과 몇억 원에서 같은 %로 삭감한다는 것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예산 신청 앞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률구조 사업을 두고 이러한 고뇌를 거듭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정이 있고 필연적으로 변민하고 고통당하는 가정과 사람이 있습니다.

“1952년 1월 제2회 사법고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었지만, 야당집 마누라라는 이유로 판사 임명을 거부당했고 할 수 없이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마치 이 나라의 여성들은 5천 년 동안이나 여성 변호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와 끝없는 탄식과 하소연을 쏟아 놓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며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선생님이 상담소의 시작에 관해 남기신 말씀입니다.

변민하는 이웃들의 탄식과 하소연이 21세기가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 낯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더 다양하고 더 민감하고 복잡한 고뇌와 변민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담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바로 이러한 이웃들의 걸을 언제나 지켜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소는 국가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집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①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주제발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김 원 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십 수차례의 일부개정(법 19차례, 규칙 17차례)

이 있었지만,¹⁾ 본격적인 개정은 없었다. 가사소송법의 조문은 총 88개조에 그치는데 반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총 171개조에 이르렀다.²⁾ 현행 가사소송법은 ①가사사건절차의 기본법 내지는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충분하여 체재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②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절차보장(특히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③국민의 법률접근성 확대(to facilitate access to the court) 등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³⁾

아래에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폐기된 2022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전체 제157개조, 이하 ‘폐기안’이라 한다)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 중 주요한 것과 추가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 지난 10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소에서는 시행 33년이 된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가정상담〉 이번 호에는 주제발표를 요약해 싣고 다음 호에는 토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및 요약 원고를 작성해 주신 김원태 교수께 감사드린다. - 편집자 주

- 1) 다른 법률의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7회이다.
- 2) 일본의 경우, 가사사건절차에 관한 법률이 339개조이며(인사소송법 46개조, 가사사건수속법 293개조), 규칙은 그 절반 수준인 175개조(인사소송규칙 35개조, 가사사건수속규칙 14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대만의 경우, 법률과 규칙의 조문 수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가사사건법 제195개조, 가사사건심리세칙 166개조).
-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배경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 제723호, 법조협회, 2017, 90~291면 참조.

II. 총칙 및 가사소송 편

1. 총칙

1) 가사소송법의 기본이념

폐기안은 가사소송법의 목적 조항에서 헌법과 실체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남녀평등’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로 대체하였다.

가사소송법의 목적은 실체법의 이념을 위하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실체법이 추구하는 가치(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보장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가사와 관련한 제도(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안의 문구는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보장)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제1안·제2안).⁴⁾

2) 가사사건의 분류 체계 개편

폐기안에서는 가사사건의 분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표로 정리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최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 2)의 도입으로⁵⁾ 폐기안 [별표 1] 가사소송사건(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분류 중 나. ‘부모와 자녀 관계 사건’ 다음에 다. ‘상속관계 사건’의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추가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폐기안 [별표 2]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중 8. 상속에 관한 사건의 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앞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을 추가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각 사건의 근거 조문을 현실화(민법 개정 조문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등)할 필요가 있다.⁶⁾

3) 관련 민사사건의 심리와 재판

폐기안은,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된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민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민사사건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폐기안 6조 제1항).⁷⁾

관련 합의부 민사사건 당사자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 제6조에 따라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는 청구일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4) 2018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안되어 있었다.

5) 민법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단서).

6) 민법 제824조의 2·제864조의 2·제909조 제5항과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7) 관련 민사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제1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제2호)에 한한다(폐기안 제6조 제1항). 폐기안은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6조 제2항). 2018년 개정안은, 더 나아가 “당사자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제1심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사건의 소(訴)를 그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원시적 병합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2018년 개정안 제6조 제3항).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사소송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폐기안 제7조 제6항 제2문 본문·단서 신설). 현재로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⁸⁾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이 아니다. 가족과 친족 사이의 상속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러한 사건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⁹⁾

4) 미성년자의 진술청취와 절차보조인

폐기안은,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폐기안 제20조).¹⁰⁾ 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영향이 있는 가사재판 절차에서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다. 가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와 관련된 가사재판 절차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정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폐기안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폐기안 제16조).¹¹⁾

다만 폐기안에서는 본인 출석주의(제15조) 다음에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제16조)을 규정하고, 사실조사의

촉탁 등(제19조) 다음에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제20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①본인출석주의, ②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③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④사실조사의 촉탁 등 순으로 조문의 위치를 바꾸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²⁾

5) 절차의 수계

폐기안은 현행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 절차의 승계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6조)을 ‘수계에 관한 특칙’이라는 표제 하에 다른 제소권자의 가사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특칙과 다른 청구권자의 가사비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특칙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제1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21조). 상속인 등의 가사비송사건의 수계에 관하여는 ‘가사비송사건의 수계’라는 표제 하에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53조).

제1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안 제21조를 분리하여 다른 제소권자의 가사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특칙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인 등의 가사비송사건의 수계에 관하여는 제53조의 표제를 ‘상속인 등의 수계로’ 바꾸어 규정하고, 다른 청구권자의 가사비송사건의 수계에 관하여는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으로 옮겨 제53조(상속인 등의 수계) 다음에 다른 제소권자의 가사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체계적이다.

8) 구 가사심판법 아래에서는 가사사건이었다(구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2. 을류 사건, 아. 상속의 회복).

9) 대만의 경우, 2012년 가사사건법 제정으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우리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병류 가사사건으로 하였다(가사사건법 제3조 병류사건 6호).

10)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규칙은 일정한 사건의 개별 가사사건 절차에서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1) 김상용, “절차보조인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4, 67면 이하.

12) 폐기안 제17조(절차구조)와 제18조(준용 규정)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제10조(수수료) 다음에 이어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 가사소송

1)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변론주의의 제한 등

폐기안은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제26조(적용 법률) 제1항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또 변론주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처분권주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에 관하여는 제3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안에서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은 다른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26조 제4항). 제4항은 단순히 가사소송에서의 반소 요건으로서의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가사소송절차에의 적용 법률에 관한 제26조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27조(관할) 다음에 ‘반소’라는 표제하에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³⁾

2) 소송능력

폐기안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

한 응소를 포함한다)와¹⁴⁾ 항소¹⁵⁾ 또는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28조 제1항). 적극적 당사자로서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것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그 결과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소극적 당사자로서의 소송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없이 가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소송을 수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송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¹⁶⁾

폐기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 및 항소 또는 항고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1문). 그런데 폐기안은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2문). 이는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의 소송행위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지연되거나 상대방의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되고 있다.¹⁷⁾

만약 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와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직권탐지주의(Findings by the Court)를 취하는 가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제한되므로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행위 중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

13) 그렇지 않으면 폐기안 제27조는 ‘관할’이라는 표제 하에 ‘관할’에 관한 규정과 ‘소송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반소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폐기안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소송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소송의 이송’이라는 표제하에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제2안).

14) 피고의 반소제기에 대한 응소행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심 소송행위에 ‘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폐기안 제28조 제2항 제2문 괄호).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원고로서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반소 원고)가 오히려 원고(반소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만약 제한능력자가 이에 응소할 수 없다면 패소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 항소 제기 전에는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폐기안 제28조 제2항 제2문 후단).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으로서 항소의 제기에 따른 제2심 소송행위’도 할 수 없다.

1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7, 51면.

17)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편,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217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편, 앞의 자료집,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52면.

향으로 해석하면 족할 것이다. 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2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재산관계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에조차 없는 규정으로 제한능력자에게 소송능력을 부여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제1안).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와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소송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제2안).¹⁸⁾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폐기안에서는 제3자의 소송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족관계 가사소송 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폐기안 제31조).¹⁹⁾ 소송계속의 통지를 요하는 소송은 ①이혼의 무효(제1호), ②이혼의 취소(제2호), ③친생부인(제3호), ④인지청구(제4호),²⁰⁾ ⑤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제5호), ⑥파양의 무효(제7호), ⑦파양의 취소(제7호), ⑧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제8호), ⑨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제9호)이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

인은 위 가족관계 가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에서 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자를 말한다(폐기안 제31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상속권 등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녀에게도 소송계속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¹⁾

4)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폐기안은 혼인관계 사건 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을 제외한 이혼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을 제1순위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규정을 유지하면서(폐기안 제37조 제1호),²²⁾ 혼인관계 소송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상태를 막기 위하여 부부 중 한 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제2순위 관할 가정법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폐기안 제37조 제2호).²³⁾

그런데 재판상 이혼청구는 상대방 당사자만 소제기권자

18) 대만의 경우, 가사사건의 처리에 절차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감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사사건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절차감리인의 행위와 절차무능력자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가사사건법 제16조 제2항 제2문).

19) 오래전부터 법원에 의한 소송계속의 통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는,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절차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131~162면 참조.

20)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따라서 사후인지의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상속분에 변동이 생길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2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앞의 자료집,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60면 참조.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 제1항 제2문).

22) 구 인사소송법상 혼인관계 사건(이혼의 무효나 취소, 이혼 또는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부부의 동거, 자의 양육 및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소)의 토지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었다(인사소송법 제25조). 이혼소송 등의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원인으로 우선한다는 고려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미성년자와 동거하고 있는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우선하게 되어 이혼소송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의 주소지는 가정법원이 이송판단을 할 때 고려하는 형태로 규율하였다(인사소송법 제31조 참조).

23)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제3순위, 폐기안 제37조 제3호), 위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허용되는 등 소송물에 관하여 임의처분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혼인 관계 가사소송과 달리 반드시 전속관할로 할 이유는 없으며,²⁴⁾ 공익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의관할로 하고 합의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제1안).²⁵⁾ 여전히 전속관할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면 엄격하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제2안).²⁶⁾

Ⅲ. 가사비송 편

1. 통칙

1) 비송능력

폐기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신분행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이 있다(폐기안 제50조 제1항 본문). 그럼에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재산적 선택이 강한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폐기안 제50조 제2항). 그 밖의 가사

비송절차에서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폐기안 제50조 제3항·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비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제한능력자는 비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폐기안 제50조 제3항·제28조 제4항 단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능력의 보충(Supplementation)과 양자의 비송행위의 충돌방지라는 절차행위의 특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우선한다는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미성년자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보후퇴한 입법이다.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어느 한쪽의 의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²⁷⁾ 따라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제1안)하고 해석에 맡기든지 아니면 가정법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입법(제2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이해관계인의 참가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규정은 소송규칙에서 규율할 소송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²⁸⁾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은 현행법이나 폐기안에서도 본법에서 규율하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다만,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제4순위, 폐기안 제4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제5순위, 폐기안 제5호),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제6순위, 폐기안 제6호). 현행법상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의 의미가 단순히 같은 주소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인지 불명확한데, 폐기안에서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으로 분명히 하였다(폐기안 제37조 제3호).

24) 이혼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이혼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폐기안 제128조 제1항).

25)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 폐기안 제27조 제4항).

26) 이와 같은 예로서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3항).

27)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사소송」, 제18권 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279면 이하; 김원태, 앞의 논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과 실질적 절차보장," 2017, 171면 이하.

28)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268면 참조.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 폐기안 제52조). 또 폐기안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과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에 관한 규정도 가사소송규칙에서 본법으로 옮겨 규정하였다(가사소송규칙 제21조·제22조, 폐기안 제52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그럼에도 개별 사건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가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4조·제65조 제2항·제84조 제2항·제89조제1항·제106조). 이는 가사소송규칙에서 가사소송법의 해당 사건 부분으로 옮겨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의 취하

폐기안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중국재판(본안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었다(폐기안 제60조 제1항).²⁹⁾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폐기안 제60조 제2항). 폐기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이 있는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다(폐기안 제60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7조 제1항).³⁰⁾

또 폐기안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별표 3 제1호다목)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별표 3 제4호나목)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였다

(폐기안 제60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목·나목).³¹⁾

4)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현행법에서는 심판 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폐기안은 청구 취하의 자유를 전제로 후견에 관한 사건 등 일정한 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폐기안 제61조).

후견 등에 관한 사건에서는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익성의 관점과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청구의 취하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친권의 상실 사건 등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적격을 부여하고 있는데(민법 제924조부터 제925조까지, 제926조 등), 이러한 사건의 청구 취하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5) 심리방법 등

폐기안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의 심문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계수하여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64조(심문의 비공개)에서 규정하고, 이어 제65조(진술 청취의 방법)를 규정한 다음 제3편 가사비송 제2장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에서 제79조(심리 방법 등)와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에서 제115조(심리 방법 등)를 각 규정하고 있다.

심문이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대원칙이란 점과 당사자

29)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건도 있는데, 청구의 취하에 일률적인 시기적 제한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 많다. 따라서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재판한 이상 청구인의 의사만으로 그 효과를 자유롭게 잃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재판 후에 취하를 허용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청구를 취하해 버리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재소금지의 효과를 생기게 할 수도 없다.

30) 일본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31) 일본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의 심판 신청 취하의 제한에 관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가사사건수속법 제153조), 이를 상속재산분할 심판 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199조).

와 관계인의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심문청구권의 보장은 절차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79조와 제115조는 조문을 합쳐 통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구체적으로는 ‘심리 방법’이라는 표제 하에,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전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된다(수정안). 심문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이와 같이 통칙에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과 폐기안의 취지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절차보장을 강화한 입법으로 평가될 것이다.³³⁾ 조문의 위치는 당연히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에서 심리 방법으로서의 심문, 심문의 비공개, 진술 청구의 방법, 증거 조사 등, 재판의 방식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³⁴⁾

2.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1)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참조). 폐기안도 “별표 2 제8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106조).

2)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은 상속권상실선고 사건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이 사건이 계속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신설).³⁵⁾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1)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관할

폐기안은 ①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27조에서 같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별표 3, 제2호가목), ②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별표 3, 제2호나목), ③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건(별표 3, 제2호다목), ④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별표 3, 제2호라목)의 사건은 제112조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사건 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폐기안 제120조).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a significant connection)이 있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³⁶⁾ 이는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사건 본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대방의 보

32) 김원태, “가사비송절차에서의 절차보장,”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50면.

33) 독일의 경우 심문청구권을 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적법 절차 규정을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4) 폐기안 제115조 제2항은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 제114조(반대청구) 다음에 ‘심리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그 밖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 될 것이다.

35) 일본의 경우, 추정상속인의 폐지에 관한 처분 심판사건 또는 그 취소 심판사건의 확정전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심판사건의 관할은 그 사건이 계속하고 있는 가정재판소가 관할하고, 그 심판사건이 계속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그 심판사건이 항고재판소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가 관할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189조 제1항).

36)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편, 앞의 자료집,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344면.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수정안).³⁷⁾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

폐기안 제122조는 구체적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및 같은 호 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민법」 제925조에 규정된 사람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03조를 구체적 검토 없이 가사소송법에서 계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폐기안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모든 사건의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결국 일정한 사건의 경우 자녀,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이면서도 즉시항고권자가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친권상실 청구도 할 수 있지만(폐기안 제50조 제1항·제2항 제2호의 반대 해석), 실권회복 선고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불복할 수 없다

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³⁸⁾ 또한 본인 이외의 다른 청구권자가 실권회복 선고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가 기각된 결정이나 친권회복의 선고 결정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의 회복을 선고한 결정에 대하여 본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가사조정 및 이행확보 편

1.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과 그 한계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폐기안에서도 여전히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다.³⁹⁾ 가사조정은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되며, 가사조정은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민사조정법의 개정에는 반드시 가사조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의 개정에도 따라 가사조정절차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⁴⁰⁾ 궁극적으로는 가사조정절차에 관하여도 가사조정절차의 특색을 고려하여 가사비송절차

3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신설 당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2009. 11. 4. 개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2016. 12. 29. 개정)으로 개정된 것인데, 또다시 폐기안에서는,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폐기안 제142조 제6항).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폐기안 제142조 제6항 본문). 실질적 내용에 차이는 없지만,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개정안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선언적 의미는 있다.

38) 일본의 경우,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 심판의 취소 심판에 대하여는, 자녀 및 친족,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5호). 신청을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의 심판을 받은 자 및 그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6호).

39) 일본의 경우, 가사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가사사건수속법에서 직접 규율(45개조)하면서도 가사심판절차에서의 참가, 기일,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자녀의 의사의 파악 등, 가사조정에 관한 심판, 가사조정에 관한 심판 이외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가사조정절차에 준용하고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258조).

40) 예를 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2조)’은 당초 예외적 ‘임의적 제도’(1990. 제정)에서 원칙적 ‘필수적 제도’로 개정되었다가(1992. 11. 30. 개정) 또다시 ‘임의적 제도’로 회귀하였다(2020. 2. 4. 개정). 이와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조변석개하는 것은 조정철학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와 마찬가지로 자기완결성을 갖도록 가사조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⁴¹⁾

2) 조정의 대상

폐기안에서는 ①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중 재판상 이혼 사건과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인 경우의 재판상 파양 사건[별표 1, 제1호가목5)·나목12)], ②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2호), ③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i)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별표 3, 제1호), ii)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별표 3, 제2호가목), iii)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별표 3, 제2호나목), iv)부양에 관한 사건(별표 3, 제3호), v)상속에 관한 사건(별표 3, 제4호)만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폐기안 제1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⁴²⁾

3) 가사조정에서의 대표당사자와 진술원용 제한

폐기안은 가사비송에서 선정당사자 제도를 도입하고(폐기안 제51조), 그에 따라 조정절차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대표당사자제도를 도입하였다(폐기안 제126조 제1항). 또한 폐기안은 민사조정법 중 진술의 원용제한에 관한 규정(민사조정법 제23조)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다(폐기안 제126조 제1항). 그 결과 가사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폐기안 제12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3조).⁴³⁾

그런데 폐기안은 소극적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알기 쉬운 법령이라는 관점에서는 준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소극적 입법형식보다는 민사조정법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적극적 입법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확보

1) 사전처분의 집행력

폐기안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가진다고 정면으로 규정하였다(폐기안 제140조 제5항). 이로써 가사사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폐기안에서는 불복신청권자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폐기안 제140조 제7항). 그런데 현행법과 폐기안에 따르면 사전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⁴⁴⁾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권 보장을 위하여 폐기안 제140조 제7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

41) 우선 폐기안 중 제135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는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연이어 오도록 제133조(조정 신청 방식)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규정하고 제134조(사실의 사전 조사)는 조문의 위치를 바꾸어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다음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가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장소(제118조), 격지조정(제119조), 조정장의 기명날인(제120조)은 가사소송법으로 옮겨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2) 2024. 9. 2. 일부개정된 민법 부칙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신고 사건(민법 제1004조의2)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번]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부칙 제4조). 그러나 상속권상실 신고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안에서 상속권상실 신고 사건의 조정 전치의 대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3) 김원태,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32호), 2006, 53면 이하 참조.

44)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오32 결정(유아인도사전처분);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오2 결정.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국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오32 결정.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⁵⁾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폐기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폐기안 제145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①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제1호), ②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2호)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폐기안 제145조 제2항).

미성년 자녀의 인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이행명령(간접강제)을 통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고(폐기안 제144조 제1항 제2호, 간접강제의 원칙), 예외적으로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폐기안 제145조 제2항 제1호·제2호, 직접강제의 보충성).⁴⁶⁾

폐기안에서는 인도청구 집행신청의 대상을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였다(폐기안 제145조 제2항). 이는 양육에 관한 처분 등에서 인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이므로 유아가 아닌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공백이 발

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⁴⁷⁾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전문법원(a specialized court)으로서 집행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기안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서⁴⁸⁾ 집행법원은 가정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폐기안 제145조 제1항).

V. 맺는말

폐기안의 특징으로서는, ①체제의 정비, ②가사사건 분류체계 개편, ③흡결규정의 보충, ④절차보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폐기안에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⁴⁹⁾

향후 가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할 때 특히 전부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개의 나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 법안의 완성도를 한층 더높여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되어 시대 상황에 적합하고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알기 쉬운 가사사건절차의 기본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5) 김원태, “가사소송법상 사전적 이행확보제도,” 「민사소송」, 제27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3, 261면.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일본의 경우, 심판전의 보전 처분 신청을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보전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가사심판 신청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가사사건수속법 제110조 제1항·제2항).

46) 독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제2문). 독일법 상황에 관하여는, 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있는가?-, ” 「가정상담」, 2024년 9월호, 7면 이하 참조.

47) 대만의 경우에도 인도의 대상을 미성년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가사사건법 제194조).

48)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 집행 사건 중 민사재판이 아닌 가사재판에 의한 것만 가정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서’라고 규정하였다(폐기안 제145조 제1항).

49) 특히 본인출석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른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액수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폐기안 제146조 제1항). ‘부양료 또는 양육비’ 지급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치 요건을 현행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폐기안 제151조 제1항 제2호). 또 현행 조정위원의 합의 과정 등의 누설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각 30만원에서 100만 원(폐기안 제155조 제2항), 100만원에서 1천만 원(폐기안 제155조 제1항)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보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현행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폐기안 제156조).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동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9)

제 7 강 몸이 기억하는 고통, 신체 및 수면장애

■ INTRODUCTION

7강에서는 신체와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신체화 증상은 심리적 통증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리적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건강한 수면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 POINT

1. 서론

신체 및 수면장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신체증상장애는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실제로 몸의 어딘가가 아픈 것이다.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우울증

도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우울증이 다르다. 유아 및 아동은 우울하면 신체가 아프다. 청소년은 주의집중이 안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성인은 전형적 우울증이나 흥미나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노인은 뼈가 저리고 어깨가 쑤시는 등의 통증으로 우울증을 겪는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신체적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 심리적 증상이 신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과도한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계속한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둘째, 조금 다르게 질병불안장애가 있다. 이는 통증이나 증상은 없으나 내가 심각한 증상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는 신체 증상이 없고 있어도 미약한 정도이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TV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모두 나와 관련된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즉 통증이 없는데 본인의 질병에 대해 과도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한 걱정을 하는 것이 질병불안장애이다. 실제로 아픈 데가 있으면 신체증상장애에 해당하고, 아픈 데가 없다면 질병불안장애로 이해하면 된다.

셋째, 전환장애 즉 기능성 신경증상장애가 있다. 이는 정신생물학적 증상이라고 표현된다. 한 가지 감각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을 쓰는 특정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정형외과나 외과에서 병명이 나올지라도 그 병명과 이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이들은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부위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신경학적, 뇌의 신경생물학적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뇌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흘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도파민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흐르면 정신증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신체적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심리적 요인과 신경학적 부분에 함께 문제가 있어도 전환장애가 올 수 있다.

넷째, 허위성장애가 있다. 허위성장애는 실제 질환이 없는데 본인은 질환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허위성장애 환자들은 신체적 증상을 가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속임수로 질병을 진단받게 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관심과 인정을 못 받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관심과 돌봄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심지어 담석이 없는데도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가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허위성장애는 피병과는 다르다. 피병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있을 수 있는데, 피병에는 피병을 부리는 데에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프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의도가 있다. 그러나 허위성장애는 특별한 의도나 이유가 없다. 오직 관심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 질병을 호소한다.

2. 본론

(1) 통증의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통증은 일종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통증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성인이 되어도 원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하기 전에도 정신적 질병이나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공포상태가 되면 통증으로 회피하려는 일이 생기며 내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기대가 계속해서 좌절되면 무력감이 생기고, 무력감을 느끼면 분노가 생긴다.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심각한 우울감에 휩싸여 미래를 밝게 전망하지 못한다. 또한 정신 면역력이 떨어지기에 통증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져서 현실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

정신신체장애는 1818년 독일 의사인 하인리히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정신신체장애는 심리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순수하게 신체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보다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여섯 번째 감각을 내장감(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른다. 힘든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 심리적 이유 때문이다.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이기에 몸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신신체장애에 속하는 질환은 특히 심리적 부분이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신신체의학에서는 심리적 요인 및 상태가 신체적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본다. 심리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신체 문제의 원인, 결과로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 문제에서 우울증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자연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인격 특성 및 대응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암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외과 의사들은 암 환자는 암 때문이 아니라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평소에 비적응적 건강행동, 술, 흡연, 과식을 많이 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스트레스와 관련

된 생리적 반응을 보면 궤양, 고혈압, 부정맥, 편두통이 악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적대적이고 억압받는 상황, 인내해야 하거나 거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는 등의 맥락에서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신체화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2) 여러 가지 신체 질환과 심리 상태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로젠만(Rosenman)과 프리드먼(Friedman)은 성격 유형을 Type A와 B로 나눴다. Type A 성격은 매우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공격적이고 적대감을 보이고 매사에 경쟁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이고 시간에 쫓기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일 경우, 관상동맥질환이 많이 올 수 있다. 반면 Type B 성격은 덜 공격적이고 성취 목표지향적인 부분이 없는 성격이다. Type B 성격과 달리 Type A 성격은 질환을 많이 겪게 되며, Type A 성격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되고 신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Type A 성격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타입은 사회적으로 홀로 생활하고, 가족들이 떠나가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은 본인의 모습을 억누르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타입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내면의 화를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심장질환의 발병과 심리적 부분의 상관관계는 정신신체의학에서 연결성이 가장 잘 밝혀졌다. Type A 성격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므로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증은 재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자살 충동의 위험성이 있기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Alexander의 가설에 따르면, 폐 질환은 어머니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소망이 원인이다.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누

군가가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는데, 이것이 좌절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상실을 잘 다루지 못하면 폐 질환이 나올 수 있다. 극도의 억제나 은폐된 공격성, 의존이 잘 안 되는 상황이 폐 질환과 관련이 있다. 폐 질환의 임상적 함의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이유로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천식과 공황장애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배우고,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환자 중 가족 내 병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는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Alexander의 가설에 따르면, 소화기 내과 질환은 구강 수용적 갈망이 결핍된 경우이다. 그런 상태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몸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위산이 분비되고 궤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계속 증가하면 위궤양과 같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정된 성격은 없지만 불안한 성격에 재발이 많고, 적대적이고 예민한 성격에서 펩시노젠 분비가 높다는 가설도 있다. 궤양성 대장염을 보면 지나치게 깔끔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분노 표현을 자제하는 강박적 성격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무의식적으로 의존 대상에 대한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갈등이 구강 공격성을 자극하고 불안을 일으키며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양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류머티즘 질환은 자기희생, 자기 학대적, 억제적이고, 완벽주의적 성격과 연관있는 증상이다. 특히 우울감과 정신적 어려움이 동반될 때 흔하게 나타난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생활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우울감이 크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약할 때 예후가 더 좋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두통은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어떤 틀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은 쉬지를 못하며,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본인은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불특정한 스트레스가 엄습하고, 정서적 스트레스, 머리와 목 균형의 통증이 동반된다. 어깨가 딱딱해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동반

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공격성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 당뇨가 더 쉽게 온다. 대부분 삶에서 계속 부정적 사건이 위협요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성격적 특성을 보이다 보니 건강한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뇨를 얻고 나서야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자신의 성격과 대인관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남에게 협조적이고, 자기주장을 못 하고, 내면의 부정적 성격을 억압하고, 외부의 누군가에게 수궁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이 많이 발생한다.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억눌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이 흔하게 나타난다.

내가 나를 억압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정신면역력이 떨어진다. 뇌와 면역체계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를 상실하고 건강하게 애도하는 것은 내면의 슬픔을 겉으로 꺼내는 것이다. 애도하지 않고, 억압하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뒤늦게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정신면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조절은 건강에 영향을 준다. 애도를 건강하게 하고,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애도이다. 그 사람을 잃고 나서 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슬픔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

(3) 수면과 각성장애

자는 것은 중요하다. 평소에 근심 또는 걱정이 있어도 잠을 자면 정리가 된다. 잠을 자고 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잠을 잘 때 보면 렘수면 상태에서 눈꺼풀을 뒤집으면 눈동자가 돌아간다.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뇌의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악몽을 꾸다. 악몽을 꾸고 일어났을 때 부모가 아이를 감싸주면 아이는

내가 느끼는 불안보다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가 일어났는데 부모가 싸우고 있다면 아이는 내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공포보다 세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수면 단계는 총 5단계이다. 1단계는 비렘수면으로 가벼운 수면 단계이다. 이때는 소음과 자극에 쉽게 각성한다. 나이가 들면서 비렘수면 단계가 증가하기에 쉽게 잠에서 깨는 양상을 보인다. 2단계도 비렘수면 단계이며 정상적 수면 주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체온이 떨어지고 안구운동이 멈추는 단계이다. 3단계도 비렘수면 단계이고 조금 더 깊은 수면으로 간다. 이 단계에서는 활력징후가 감소하고 맥박과 호흡, 혈압이 안정된다. 깨어나기 어렵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4단계도 비렘수면 상태인데 이때는 숙면단계로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한다. 7~8시간 동안 소변을 누지 않고 생리적으로 이완되며 재충전된다. 깨우려면 굉장히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4단계에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몽유병이나 야뇨증이 올 수 있다. 이때 부모가 뭘 해도 괜찮다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대응하면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 깊은 수면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5단계는 렘수면 단계로 굉장히 중요하다. 렘수면은 수면 시작 90분 후부터 일어난다. 눈꺼풀은 감고 있으나 눈동자가 계속 움직인다. 힘들고 복잡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단계이다. 나이가 들면 렘수면이 유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폭 자고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우리의 심신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수면 상태가 된다.

(4) 수면장애의 종류

첫째, 불면장애는 수면 시작과 유지가 어렵고 자고 일어났을 때 수면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주 3일,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장애라고 한다.

둘째, 과다수면장애는 자주 잠에 빠져들고 매일 9시간 이상 자며 잠에서 깬 후에도 각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셋째, 수면 발작증(기면증)은 주간에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을 겪는 것이다. 이때는 졸도하듯이 졸음이 온다. 탈력발작이라고 해서 강렬한 감정 경험 이후 근육이 이완되고 졸

음이 쏟아지는 것이다.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 수면다원검사에서 15분,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에서 8분 이내 수면이나 2번 이상의 입면기 렘수면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기면증의 경우 계단을 올라가거나 운전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셋째,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말한다. 늦은 취침을 하거나, 이른 기상을 하거나, 교대근무를 해서 정상적 일주기와 본인의 리듬이 맞지 않거나, 잦은 낮잠 등으로 수면 습관이 깨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는 24시간이라는 일주기 양상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넷째, 초조성 다리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은 불쾌한 감각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고 잠에서 깨는 경우를 말한다. 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되거나 심해진다. 낮보다는 밤에 악화되거나 밤에만 나타난다. 주 3회, 3개월 이상 계속 되면 진단이 내려진다.

다섯째, 호흡 관련 수면장애는 수면 상태에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신경과에 가서 진단받고, 심한 경우 목젖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한다. 이런 처치를 하지 않으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피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수면이상증은 렘수면 상태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악몽장애, 렘수면 행동장애 등이 있다. 주요 정신장애에서도 수면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요 우울증의 80~85%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면 낮에 힘들고 예민해진다. 조현병도 렘수면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 파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잠을 잔다. 치매에서도 수면 문제가 존재한다.

(5) 수면장애의 치료

이러한 수면장애의 치료에는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수면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는 수면위생교육, 꼭 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인지치료, 수면제한치

료, 자극제어치료, 이완 요법, 약물 요법 등이 있다. 약물 요법은 수면제를 임시적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수면제보다는 항우울증제 처방을 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수면제와 항우울증제 모두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조심해서 먹는 것이 좋다.

수면위생에는 우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독서나 TV 시청은 하지 않는다. 낮잠은 되도록 피한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고, 자기 전 과식을 피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하고, 수면 환경은 쾌적하며 빛, 소음이 차단되도록 조성하고, 낮 동안 적당량 운동함으로써 숙면을 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면제한치료는 누워있는 시간을 줄인다. 누워있는 것보다 자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누워있는 시간도 수면 시간으로 계산한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앉아서 가부좌하고 복식호흡을 하면 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덜 자면 다음에는 더 잘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극제어치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는 되도록 누워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 30분 이내로 하며,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로 가고 다시 잠이 올 것 같으면 침실로 가는 방법을 잠이 올 때까지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완요법은 내가 시원한 해변에 누워있다고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며 복식호흡을 하면 도움이 된다.

약물은 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처방을 받아서 한정된 기간에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수면제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장기간 사용은 금단 증상과 의존 위험이 있다. 음주와 수면 문제가 있으면 음주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

3. 결론

정신건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므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면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 수면 관리를 중시하며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남의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될 예민해 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3)

3. 민법 개정운동의 신호탄

법전편찬위원회가 민법 친족상속편의 축조기초를 완료한 것은 1952년 7월 4일이지만 그 후 다시 정리하여 정부로 이송한 것은 1953년 9월의 일이었다. 민법 초안은 정부내에서도 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장경근의 ‘민법 친족상속편 요강 사안’은 점진적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었는데 반해 김병로 위원장의 초안은 오히려 일보 더 후퇴하여 ‘전통 고수의 보수성’에 역점을 두었음이 분명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법전편찬위원들의 입장은 대략 세 갈래로 나뉘고 있었다. 김병로 위원장의 입장처럼 친족법에 관한 한 ‘논리보다는 관습’을 중시한다는 ‘보수 수호파’와 장경근의 입장처럼 관습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바람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점진적 개혁파’, 그리고 신언한의 입장처럼 이미 헌법이 남녀평등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이상 하위법이 위헌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급진적 개혁파’ 등.

이 같은 논의가 한창일 무렵 법전편찬위원인 신언han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변호사 이태영의 만남은 ‘가족법 개정운동의 불씨를 당기는’ 역사적 만남이 되었다.

1952년 1월 이태영은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또 유일하게 합격하였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사법관 시보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영이 실습 중인 법원에 신언한 위원이 업무차 들렀다가 법전편찬위원회의 속사정에 대해 개탄하는 말을 했다. 이에 이태영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신언한 위원은 “친족상속법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남녀평등을 따르지 않고 남자 우대, 여자 하대의 관습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태영은 그 길로 여성문제연구원의 황신덕 원장을 찾아갔다. 이태영은 친족상속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고, 지금 그 기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보적인 소장파 위원이 남녀 차별하는 내용을 다 고치자고 했다가 선배들로부터 모욕적인 꾸지람을 받았으며, 신민법이 제정되려는 이때 다시 남녀 차별적인 법이 제정되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는 등등을 설명하는 데만도 상당한 애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를 먹었다.

이태영은 그 뒤 스승인 정광현 교수도 찾아가 의논했다. 정 교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는 신민법 제정에 있어서 성차별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그 방법은 여성단체 이름으로 진정서와 건의문 등을 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들의 권리를 반영시킨 친족상속법 초안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방향도 정해졌고,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은 마당에 어떻게든 운동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2년 봄, 친족상속편 차별조항 철폐를 위한 최초의 진정서를 여성문제연구원을 비롯한 대한YWCA연합회 등 9개 여성단체 이름으로 관계 기관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후 이루어진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4. 건의문 제출

이태영이 주도한 여성계가 정광현 교수의 지도로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대하여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낼 건의문을 작성한 것은 1953년의 일이었다. 이 최초의 건의문이 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름으로 국회 및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병로에게 발송됨과 동시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대한YWCA연합회 · 대한부인회 · 대한여자청년회 · 대한여자국민당 · 여성문제연구원 · 대한조산원회 · 여자선교단 등 7개 단체가 연합하여 낸 이 건의문, 즉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는 “전국 여성을 대표하는 본 연합은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종래의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케 하기 위하여 자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하여 건의하오니 심심한 아량과 현명한 영단으로 채택하심을 양망합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건의의 요지’ 및 ‘건의의 이유’를 항목별로 서술했는데, 7개 항으로 된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건의의 이유는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42~45쪽 참조)

건의의 요지

(1) 호주권 관계

- ① 여호주 또는 여호주 될 가녀(家女)가 혼인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부(夫)가 여호주가(家) 또는 처의 부(父)가에 입가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가족인 여자도 분가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기혼여자로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부(夫)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때나 실가(實家 : 친정)에 복적을 원치 않을 때에는 일가를 창립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2) 혼인 관계

- ① 부부동거의 장소는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 단 협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할 것
- ② 부 또는 처가 혼인 전부터 취득한 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서 얻은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 어느 편에 속하는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할 것)
- ③ 약혼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설치할 것

(3) 친권 문제

- ① 친권의 행사는 부모 공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할 것

(4) 양자 문제

- ① 양자는 동성동본임을 요치 않을 것
- ② 성년 이상의 남녀는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양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양자는 남녀를 불문할 것
- ④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동의 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할 것
- ⑤ 직계비속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양자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호주상속인의 순위 문제

- ①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자, 단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할 것
- ② 제2순위 :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단 수인의 경우에는 연장자로 할 것
- ③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
- ④ 제4순위 : 피상속인의 모
- ⑤ 제5순위 : 피상속인의 조모

(6) 재산상속 문제

- ① 출가녀의 재산상속분을 남형제와 균등히 할 것
- ②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할 것
 - i)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는 3분의 1
 - ii)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는 2분의 1
 - iii)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는 3분의 2

(7) 유류분(遺留分) 문제

직계비속인 여자 및 배우자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여 제6항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치 않을 것

이러한 건의문의 주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권 문제에서 “상당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성년의 여자로서 호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 연하의 비속인 남자의 호주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자에 대한 큰 모욕이며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혼인 문제에서 “종래 부부 동거의 장소를 부권에 일임한 것”은 헌법 제20조에 위배됨을 환기시키는 한편 “부부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을 부의 권리에 속하게 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친권 문제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호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주고 어머니에게 차선의 유보를 두는 규정은 “남녀평등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넷째, 출가녀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치 않음은 남녀동등권을 인정하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맞지 않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현 법률사상과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바이므로 배우자 상속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남녀평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건의문과 진정서·호소문이 각 요로에 발송되고, 좌담회를 열고 계몽강연을 갖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일이 황신덕과 이태영에 의하여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태영 등은 다시 제2차적인 전략으로 법조계 원로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법전편찬위원회가 마련한 친족상속편 초안은 여성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 6년에 걸친 심의를 마치고, 1954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 초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민법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954년 10월 26일 정부 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달 28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55년 3월 15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편집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갈등이 부부, 부모와 자녀 등 가정폭력으로 확대돼 서로 용서와 이해 구하면서 해결의 실마리 찾아

2021버1**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2(둘째 딸) 개별상담 2회
관계인(아내)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6회, 부부 교육강좌 2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1. 11. 29. ~ 2022. 6. 7.

상담경과

행위자는 관계인과 결혼한지 28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3녀가 있다. 피해자1은 첫째(28세), 피해자2는 둘째이다(25세). 2020년 10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1과 방 정리정돈에 대해 이야기하다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말리는 관계인을 밀쳤고 관계인이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2가 경찰에 신고하자 흥분한 행위자가 베란다에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1, 2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가정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와 관계인을 상담한 결과 몇 년 전부터 피해자2가 관계인에게 폭언, 폭력을 사용하여 가족간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2는 오랜 기간 대입준비, 학점은행 이수, 간호조무사 공부, 웹디자인 공부 등을 하였

다.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처럼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책임을 부모 탓으로 돌렸으며 관계인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피해자2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2에게 취해야 할 행동원칙(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할 것 등)을 안내하고 부모도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는 피해자2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 등을 지원하고 집에서도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2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잘 알고 있었으며 현실적인 접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므로 상담에서 그 방향성을 지지하고 조언하였다. 피해자2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와 갈등 없이 지냈고, 자신의 머릿속에 엄습하는 생각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주의집중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주의산만하고 충동적인 자신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였으며, 시작한 공부를 계속하고 매듭짓기로 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와 관계인은 부모자식간의 돌이키기 어려운 오해를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었는데 '용서'라는 단어를 찾았다고 하였다. 피해자2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점은 인사도 나누고 대화를 하는 끈이 생긴 점이다. 행위자는 피해자2의 마인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대화의 끈은 가능하므로 앞으로 대화를 잘하겠다고 하였다. 관계인은 그동안 피해자2가 밋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2의 진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공부를 마무리한 후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배우도록 찬찬히 지도하겠다고 하였다. 부모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졌고, 실제로 피해자2

와의 대화나 관계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점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1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5회(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4회
등 17회

상담기간

2021. 11. 29. ~ 2022. 6. 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5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35세, 32세)이 있다.

2021년 5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작은아들 결혼 축의금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먹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행위자와 다른 방을 쓰며 냉담하게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결혼초부터 행위자가 자신을 아내로 존중해주지 않고 시가 식구나 다른 사람을 우선한 점, 매사 혼자 결정하고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는 점 등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부부는 2002년에 이혼하였다가 아이들을 생각하여 재결합하였는데 재결합시 행위자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약속은 잘 지키고 있었다.

행위자는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지만, 중간점검 결과 피해자는 행위자의 태도는 변함없고, 국민연금 수급 사실 조차 공유하지 않았으며 매사 자기만 알고 지낸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화해하고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혼을 바랐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집을 나가 혼자 지내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이혼이나 별거할 의사는 없으며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 사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연금을 절반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를 말해주면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연금 분할 외에 식사 후 설거지, 주1회(일요일) 청소, 매일 음주에서 주 3회로 절주 등을 제시하였으며 행위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실천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분할해주었으며 절주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이혼도 고려 중이었다. 이에 행위자의 폭력 등이 재발하여 이혼의사가 확고해지면 본소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행위자에게는 폭언, 폭력, 경제적 통제, 주사 등을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러한 행동 재발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소에서 이혼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피해자1(딸)
피해자2(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비대면 실시), 자조모임 3회(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3회 등 21회

상담기간

2021. 12. 17. ~ 2022. 6. 1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2와 결혼한지 27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피해자1, 23세), 1남(23세)이 있다. 행위자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도 1녀(35세, 결혼), 1남(37세)이 있는데 모두 독립하여 살고 있다.

행위자는 2021년 4월 사건당일 혼자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1이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2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3회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1의 주거(행위자와 피해자1,2가 함께 살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2에 의하면 행위자는 자녀들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녀에게 강압적인 언어폭력을 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갔다고 하면서 ‘폭력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 주기 바랐다. 그리고 이번 사건 외에 피해자2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가사를 도와주지 않는 문제, 호칭 문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 등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자신은 폭력을 하지 않았고 리모콘을 빼앗으려

고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고발한 딸(피해자1)은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가부장적 사고를 드러냈다. 본 사건 후 피해자1은 독립을 하였고 부녀간 교류는 없었다.

상담에서는 행위자의 폭력 및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부부존중대화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명령조 말투를 개선하도록 하고 부부간 호칭을 ‘아줌마’ ‘아저씨’ 대신 ‘여보’ ‘당신’이나 그에 같음하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조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위자는 공감을 경험하면서 위안을 받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고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1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2는 행위자가 배우자, 부모,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잘하는데 유독 피해자1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1이 비록 성인이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도록 행위자에게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10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10/17	14명	분노 다루기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10/2	14명	산다는 건, 벌일 다 생긴다는 것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10/16	15명	관계원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10/23	17명	부부관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10/14	15명	가족이 된다는 건	
등지교실	10/16	49명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③

● 성이 다른 아이도 양자가 될 수 있다

Q 문 32 | 입양하기로 한 아이가 저와 성이 다른데 입양이 가능한가요? 입양하면 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달라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과 본 변경 청구를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또는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됩니다(동법 제908조의3).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Q 문 33 | 입양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A 입양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입양의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입양특례법 제11조). 이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동법 제14조). 귀하가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게 되면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양자의 친생부모의 이름은 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되며(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제3조),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동예규 제4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란에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동예규 제5조).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나타나게 됩니다(동예규 제6조).

● 성년자 입양의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

Q 문 34 | 22살인 대학생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친모는 사망하였고, 친부는 5년 전부터 소식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학생 친부로부터 입양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A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귀하처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입양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와 양자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10개월 전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설득해보았지만, 상간녀까지 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하니 더 이상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혼인의 형태로는 사실혼과 법률혼이 있습니다. 우선 법률혼은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81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혼인의 의사 합치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사회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혼인 생활로 인하여 유지·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 관계 파탄의 피해자인 일방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

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참조).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불법한 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든 법률혼 관계에서든 혼인 생활로 인하여 유지·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소득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10개월 전 결혼식을 하였으므로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양가 가족 행사 참석한 사진이나 문자 등 대화 내용,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내역 등을 사실혼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함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가 귀하에게 사실혼 해소를 강요하며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들을 입증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귀하의 부부공동재산 유지·형성에의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슬기 변호사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23.11-2024.10

책

Take out 유럽예술문화	하광용 파람북 2023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이제환 태일사 2023
중독 조절을 위한 독서치료	임성관 외 시간의물레 2022
철학, 개념	박준영 교유서가 2023
부부·가족상담 핸드북	권수영 외 학지사 2020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 외 미래의창 2023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	김만호 보고서 2023
김대중의 성평등	박진경 외 지식산업사 2024
강점관점 해결중심 사례관리	노혜련 외 학지사 2020
우리들의 민주주의	박익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024년 헌법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4
2024년 법전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4
2024년 소법전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4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김동근 법률출판사 2023
피해자학	허경미 박영사 2023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법무부 법무부 2023
스토킹 피해진단 체크리스트·해설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2024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24
친족상속법	김주수, 김상용 법문사 2024
독일 민법전 : 가족법	오종근 외 박영사 2023
친족상속법 강의	윤진수 박영사 2023
성년후견심판 절차실무	법률연구회 법률연구회 2022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오경수 외 지혜와지식 2023
상속과 포기 한정승인과 청산 상속재산 파산실무	김현선 법률지식 2023
부동산등기기록례집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2
법원실무제요 형사(I)-(III)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3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23
요건사실론	신관악 민사법학회 신관악 민사법학회 2022
가압류 가처분신청 이론 및 실무	김동근 외 대원 2023
가사소송·비송서식과 사례	안재후 법률정보센터 2008
신개인파산·회생실무	장중운 진원사 2023
사회복지법연구	태평양·동천 경인문화사 2019
이주민법연구	태평양·동천 경인문화사 2016
치매와 인지-의사소통	Ellen M. Hickey 외 학지사 2022
교차하는 페미니즘	권영빈 외 보고서 2023
흰	한강 문학동네 2018
노랑무늬영원	한강 문학동네 2018
내 여자의 열매	한강 문학동네 2018
여수의 사랑	한강 문학동네 2018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문학동네 2023
2024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정영수 외 현대문학 2023
2024 이상문학상 작품집	조경란 외 문학사상 2024
2024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조경란 외 문학동네 2024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조선미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I)	김영란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미진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	정가원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정책에 대한 젠더분석 방법 및 활용방안 연구	마경희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2023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정성미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가족변화 관점에서 가족센터사업 현황 분석 및 개편 방안 연구	김소영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김효정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배정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강서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상담소 자료집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등지고실VIII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2023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외 총 259 권

* 자료분야별: 사회과학 103권, 법학 92권, 문학 16권, 기술과학 13권, 역사·지리 10권, 철학 9권, 총류 6권 등 포함

최정아 사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해서 싣는다.

박 채 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실습을 진행하며 가족법에 대해서 거의 전무했던 상태에서 각각의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거 양육비 이행 청구 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법적 지식이 쌓였다는 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과 한정 승인 관련 서류 문의 상담건으로부터 필수 서류에 대해 배웠고 한정 승인 후 구상금 소송 답변서 대서 및 상담 참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3건)을 참관하며 숙려기간 단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보조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 기간은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 이념과 같이 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봉사과 배움의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준 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론으로만 접했던 법을 실무로 체험하는 것이 기대되었고, 상담소에서 관련된 사건을 접하고 참관하면서 해당 법률 절차가 실현됨을 목격한 것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실습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돌아보면, 심화된 법률적 이해를 위해선 훨씬 많은 법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고, 실제로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중함을 이해하면서도 그 (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이번 실습의 시사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새삼 놀랐으며, 이혼, 가정폭력, 친권, 양육, 상속 등에 관한 고민과 불화를 접하면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의미와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 스스로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법률 외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그 가치를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통감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저 또한 베풀며 생활하고자 함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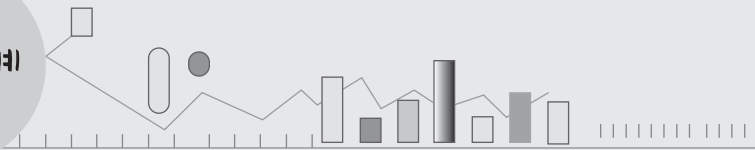
조 원 준

동국대학교 법학과

저는 지난 학기에 가족법을 수강하며 흥미가 생겼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우리 대학과 현장실습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기대 이상의 많은 지식을 배웠으며 수업을 통해 가족법에 관한 기초를 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는 살아있는 현장으로 요구되는 지식은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실습 내용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대서, 진술서 작성 대서, 전화를 통한 가사 절차의 안내가 있습니다. 평소 학교 현장에서는 실무적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한 이러한 희소한 경험은 저에게 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고 가족의 형태와 의미 및 본질이 변모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가정 문제를 현장에서 가까이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평등과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사업,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왔으며 이와 깊이 연관된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촉구하여 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시행 33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족 문제 역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만 따른 일부 개정만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이 가족복리를 위한 후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2015년에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바 있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동 개정법률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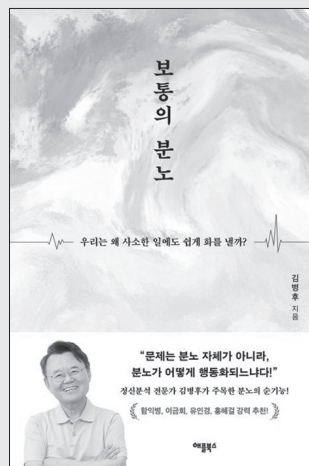
이에 상담소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심포지엄은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

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원태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 주제에 관심이 깊은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여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 이사인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화제의 신간 『보통의 분노』 발간



“분노에 압도되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분노에 대해 정말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노’는 우리 삶에서 흔하고 중요한 감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여 년 넘게 방송과 글, 강연 등을 통해 부부 갈등을 다뤄 온 김병후 원장이 9년 만에 발표한 신간 『보통의 분노』에서 분노의 역할과, ‘감정의 급발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분노 사용법을 알려 준다. 또한 정당한 분노가 건강하게 표현될 때 인간관계와 사회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이야기한다.

김병후 원장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우울과 불안, 그 밑바탕에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떨쳐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으며 부정적 감정은 내면에 켜켜이 쌓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오래 시간 억눌러 온 분노는 폭력이나 범죄 같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급발진’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노 상황을 마주하는데 다른 다양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에다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분노』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인 김병후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다양한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했고, KBS <아침마당>, SBS <뉴스 따라잡기>, EBS <60분 부모> 등 방송에 출연해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상담해 왔다. 전문가로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조언으로 위기에 직면한 여러 부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 《아버지를 위한 변명》, 《여자는 절대 모르는 남자 이야기》(공저), 《너》, 《심리 톡톡 나를 만나는 시간》(공저) 등이 있다.

상담소와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을 앞둔 1996년 8월 ‘가정폭력 심포지엄 관련 사전 모임’을 함께 시작한 이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1998, 1999)을 비롯해 본소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2000)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2002~)과 현재까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9년 9월부터는 상담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본 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와 간담회 가져

본소는 10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본 상담소는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직후인 1998년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 10월 18일 현재까지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3,660명을 수탁받아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을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가정보호 위탁기관 방문 계획에 따라 이날 본소를 방문하였다.

8층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본소 광배희 소장이 본소와 서울가정법원간의 오랜 업무협력 관계를 재조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 특히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 수탁 상담에 요청되는 법원 측의 경제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처분이 필요한 가정보호 사건은 폭증하는 반면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본소가 법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위탁 보호처분 사건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집행해 주는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원 측의 수탁기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후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본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현황,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의와 본소의 답변 및 건의사항 등이 이어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집단상담 및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의실과 개별상담실, 상담소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실 등을 돌아보았다. 재판부 일행은 이날 방문을 통하여 본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구조사업과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본소를 방문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김형률 부장판사, 김봉남 판사, 김재학 판사, 김이슬 판사, 김선화 판사,



임세준 판사, 이재숙 조사관, 김영희 조사관이며, 본소에서는 광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 관련 모임

지난 10월 25일 본소에서는 당일 심포지엄 직후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들 1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저소득, 취약계층 소송지원 연계 절차 등 상담소의 소송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소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본소 조은경, 복미영, 권지연 상담위원과 법률홈닥터인 광진구청 황지영 변호사, 도봉구청 김찬희 변호사, 원스톱솔루션센터 최윤정 변호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임규선 변호사, 구리시청 이상호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예진 변호사, 인천 광화군청 신민규 변호사, 광명시청 최지현 변호사, 안성시청 장보람 변호사,

2024년 10월 상담통계

총 건수 4,302			
법률상담 (3,613)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1,112	2,382	108	1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02		18	69

• 인터넷 정보 이용 175,462 건

2024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02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6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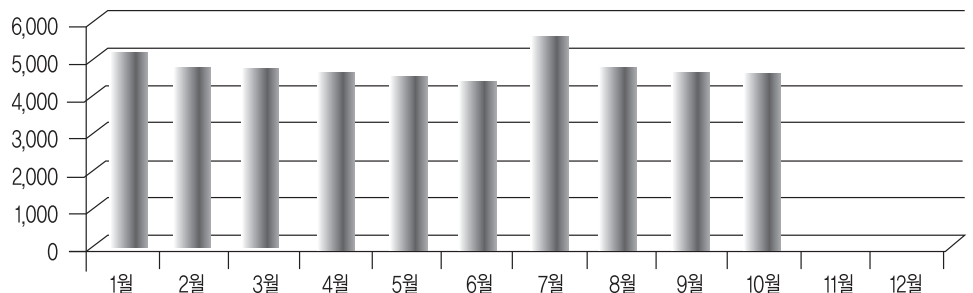
(84.0%), 화해조정 602건(14.0%), 소장 등 서류작성 18건(0.4%), 소송구조 69건(1.6%)이었다.

법률상담 3,61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9월에 비해 남녀 관계(0.4%→0.6%), 부부갈등(3.7%→3.8%), 사실혼해소(0.5%→0.6%), 위자료·재산분할(6.0%→6.4%), 친권·양육권(4.3%→4.7%), 양육비(8.5%→9.6%), 친생자존부(1.5%→2.1%), 입양(1.1%→1.8%), 친양자(0.7%→0.8%),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5→0.6%), 이혼무효·취

소(0.0%→0.1%), 부양(0.6%→1.0%), 유언·상속(7.5%→9.4%), 가족관계등록부(2.2%→3.2%), 미성년후견(1.0%→1.2%), 성년후견(3.0%→3.2%), 가사절차(4.4%→5.5%), 임대차(0.1%→0.2%), 파산(1.7%→2.5%), 개인회생(0.3%→0.5%), 형사절차(0.1%→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61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12건(30.8%), 전화상담 2,382건(65.9%), 인터넷상담 108건(3.0%), 서신상담 11건(0.3%)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보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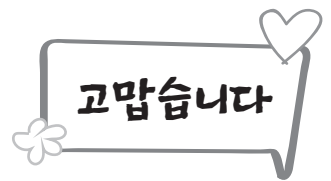
- 10. 25. 법률구조체험교육 - 이레상담교육원
- 조은경 상담위원
- 10. 29.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 애란원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8일 대검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이연숙 류큐대학 교수, 이노우에 마사코 카나가와대학 교수 등 일본학자 5명과 상담소 사업과 가족법 등에 관해 화상으로 회의를 하였다. 28일에는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에 참석하였고 30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사건을 조정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II) 수강생들에게 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출장상담실에서 상담참관 지도를 하였다. 1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전을 심의하였다.



2024년 10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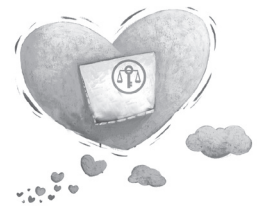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대학생 자원봉사

정정연, 정가영, 정윤지, 류제빈, 김민서, 이양현, 나윤우, 김연지, 서채영, 고유진, 김태연, 최연지, 김민지, 정재경, 박수빈, 노태연, 김소영, 정태운, 김현빈, 오나현, 강민서, 김용평, 조민규, 손예린, 김지원, 김주하, 한아름, 이재영, 장진혁, 최민제, 강영진, 김시현, 하유지, 이서연, 황예원, 원서영, 김상은, 이해원, 이재운, 이다경, 임성완, 김예지, 김경민, 이경주, 윤서영, 구가연, 손유정, 김예원, 천장원, 원대한, 김은유, 김지우, 정민주, 김유빈, 장다원, 이은세, 최서연, 이다빈, 방승현, 전서영, 문정현, 김다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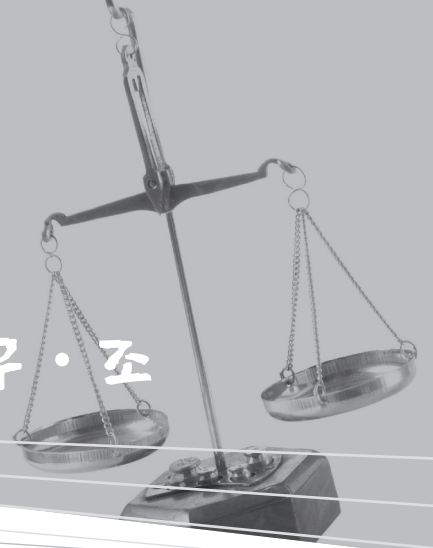
신연희,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가족을 유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3-1-224

담당 : 김형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6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원고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도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렀다. 결국 거주하던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방문과 독촉을 피해 어린 사건본인과 함께 월세살이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런 와중에 피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더니,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9.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4.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카를 자녀로 출생신고한 것을 바로잡음

법률구조 2024-1-144

담당 : 김재홍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여, 2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5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 언니의 자녀이다. 피고의 친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 피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것을 부탁하였다. 곧 잘못된 출생 신고를 바로 잡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후 원고는 당연히 피고의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 잡았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2021년 대출 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8. 1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271

담당 : 오수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40대)은 2004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8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지만, 피신청인은 2개월가량 양육 후 신청인과의 상의도 없이 자녀들을 신청인에게 돌려보냈다. 신청인은 2020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양육비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65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2024. 9. 2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2020년단****(병합) 재산분할사건의 2020. 5. 29.자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1. 10.부터 2024.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4. 10.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196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입지 좋은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다. 허름한 상가이다 보니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업이 잘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중에 자금이 없던 신청인은 추가로 신용대출과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이미 신청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배우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장사가 곧잘 되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면서 다시 주저앉게 되었다. 결국 배우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0. 7.)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4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1월 25일,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1월 28일	부부대화법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삼성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5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